

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학술림규정

제정 1982. 3. 1

개정 1992. 7. 28

개정 1994. 11. 28

개정 1996. 9. 16

개정 2010. 2. 8

개정 2014. 4. 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3조에 규정된 순천대학교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학술림(이하 "학술림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 2. 8)

제2조(직무) 학술림은 입학에 관한 시험·연구와 연구결과의 보급 및 임업경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 (개정 2010. 2. 8)

제3조(임장) 학술림에는 임장을 두고, 학술림장은 생명산업과학대학 부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생명산업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1994. 11. 28, 2010. 2. 8)

제4조(조직) ① 학술림에는 연구부·사업부·관리과를 두고 송광월산학술림과 서면농장에 임업포장을 둔다.(개정 1996. 9. 16, 2010. 2. 8)

② 연구부와 사업부는 부장을 두되 이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학술림장의 추천으로 생명산업과학대학장이 임명하고, 약간인의 조교와 보조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0. 2. 8)

③ 송광월산학술림과 서면농장 임업포장에는 관리소를 설치하여 약간인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1996. 9. 16. 2010. 2. 8)

④ 관리과는 과장을 둘 수 있으며, 직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4. 4. 07)

제5조(임무) ① 연구부는 실험·실습 및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사업부는 학생의 실습 및 교수의 시험연구를 위한 각종 수목을 확보·보존·관리하는 사항을 분장한다.

③ 관리과는 일반사무·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학술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0. 2. 8)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술림장이 된다. (개정 2010. 2. 8)

②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및 직원 중에서 학술림장의 추천으로 생명산업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1994. 11. 28, 2010. 2. 8, 2014. 4. 7)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술림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10. 2. 8)

2. 학술림 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 (개정 2010. 2. 8)

3. 기타 학술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(개정 2010. 2. 8)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(1982. 3. 1)

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4. 11. 2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9. 1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2. 8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4. 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